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45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7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조례의 일부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제2조에서 정의조항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.

○ 제4조에서 보조금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”을 “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야간시간대”를 “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”로, “의약품의”를 “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”로, “공공 야간약국의 운영과”를 “운영하는 야간약국의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공 야간약국”(이하 “야간약국”이라 한다.)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
2. “야간시간대”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공공 야간약국(이하 “야간약국”이라 한다)의 지정·운영”을 “야간약국의 지정”으로, “적극 노력해야 한다”를 “노력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공공 야간약국의 지정·운영 등)”을 “(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공휴일”을 “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

간대”로, “야간약국을 지정·운영”을 “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안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,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, 제6조를 제5조로 하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홍보) 시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.

제5조(종전의 제6조)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지도·감독”을 “관리”로 한다.

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「약사법」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,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

수정안조문 대비표(안)

제 정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	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---------- ----------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-- 운영하는 야간약국의 ---------- 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공야간약국”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 등(이하 “시민등”이라 한다)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“공공 야간약국”(이하 “야간약국”이라 한다.) 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(이하 “시민등”이라 한다)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

	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 2. “야간시간대”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.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공공 야간약국(이하 “야간약국”이라 한다)의 지정·운영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,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. 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. 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야간약국의 지정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 노력해야 한다. ② ---------- ---------- 하여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제4조(공공 야간약국의 지정·운영	제4조(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)

등)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	① ----------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----------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--.
② 야간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<신 설>	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,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제5조(의무 및 준수사항)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, 「약사법」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6조(홍보) 시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.
<신 설>	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

	칙으로 정한다.
제6조(야간약국의 관리) <신설>	제5조(야간약국의 관리)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「약사법」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야간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관리----------.
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야간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고,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.	<삭 제>
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·부당한 사항,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·시정명령·이행명령·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<삭 제>
④ 제3항의 경고·시정명령·이행	<삭 제>

명령·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
<신설>	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,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7조(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야간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야간약국 참여 약사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발간하는 공보·홍보매체나 방송·언론 등을 통해 야간약국을 홍보한다.	<삭 제>
제8조(위탁 운영) ① 시장은 야간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등에 야간약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② 야간약국의 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	<삭 제>

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야간약국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④ 시장은 야간약국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		
제9조(자치구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직접 야간약국을 지정·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<삭 제>	
제10조(포상) 시장은 야간약국 참가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야간약국 운영에 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	<삭 제>	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	<삭 제>	

한다.	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】

Ⅶ. 소수의견 요지 :「없음」

○ 운영실적의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.

○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에 반영.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　이 조례는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,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공 야간약국”(이하 “야간약국” 이라 한다.)이란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시민과 관광객 등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.
2. “야간시간대”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,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② 시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

야 한다.

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4조(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) ① 시장은 시민 등에게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,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야간약국의 관리)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「약사법」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, 시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매년 조사하고, 그 성과와 실적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홍보) 시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

홍보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을 위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